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09. 4. 27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5조, 안 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 잡종재산 → 일반재산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
-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한 경우 사용료·대부료 감면 (안 제32조)
 - 사용료·대부료의 80% 감면

3. 참고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심의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각각 “심의회”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 제21조 · 제22조제1항 · 제22조제2항 · 제22조제3항 · 제22조제5항 중 “행정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 제24조 · 제38조제1항 · 제38조제2항 · 제38조제3항 · 제38조제4항 · 제38조제5항 및 제41조 중 “잡종재산”을 각각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각 목의 행정재산 ·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을 “각 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8조 · 제19조제1항 · 제19조제2항 및 제20조 중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각각 “행정재산”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을 “상시종업원”으로, “당해 지역 내”를 “시 지역 내”로 한다.

제32조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액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 중 “공하기”를 “제공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 나. (생략)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 -----. 1. (현행과 같음) 3. 행정재산----- ----- ----- 4. 일반재산----- 5. (현행과 같음) ② ----- ----- ----- --심의회----- -----.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 가. ~ 나. (현행과 같음)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행정재산 ----- ----- -----.	○ 조문 변경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 조문 변경 ○ 「건축법」 개정 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u>행정재산·보존재산</u>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보존재산</u>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u>행정·보존재산</u>을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행정·보존재산</u>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u>----- ----- ----- ----- -----. ② <u>행정재산</u>----- ----- ----- -----. 1. ~ 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수익허가) <u>행정재산</u>----- ----- -----. 1. ~ 7. (현행과 같음)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 <u>행정재산을</u> ----- ----- ----- -----.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u>행정재산</u>-----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생략)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생략)	----- ----- -----. ②----- -----행정재산----- ----- ----- -----행정재산----- ----- ----- -----. ③-----행 정재산-----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행 정재산----- -----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현행과 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장 <u>잡종재산</u> 제24조(연고권 배제) <u>잡종재산</u>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생략) ④ (생략) 1. ~ 5. (생략) 6. <u>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u>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장 <u>일반재산</u> 제24조(연고권 배제) <u>일반재산</u> ----- ----- -----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상시 종업원</u>----- ----- ----- ----- <u>시 지역 내</u>----- ----- -----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 조문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 (생략)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u>재정경제부장관</u>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 사. (생략) 2. ~ 3. (생략) <u><신설></u>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략) ②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1. (현행과 같음) 가. ----- ----- -----<u>기획재정부장관</u>----- ----- -----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② 「<u>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u>」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 ----- <u>일반재산</u>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 ----- -----<u>일반재산</u>----- ----- -----	○ 조문 변경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u>잡종재산</u>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잡종재산</u>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 ~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	-----. ③----- ---<u>일반재산</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u>일반재산</u>----- ----- ----- ----- -----. ⑤----- ----- ----<u>일반재산</u>----- ----- ----- -----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정비

[illegible]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시설(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인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에 한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면율
2. 도로 및 하천의 사용료등 : 「도로법」 및 「하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및 통행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